

# ABCM이란?

전략물자라 함은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 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편집자 주

**Q** 국제적인 규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현재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적인 수출규제는 일반무기 관련 바세나르협정(WA), 핵무기 관련 원자력공급국그룹(NSG),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관련 호주그룹(AG) 및 미사일 관련 기재·기술수출통제(MTCR) 등 4개 국제협약이 있습니다. 이를 다자간 또는 구제 수출관리체제(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라 합니다.

**Q**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는 어떻게 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A** 핵무기 확산방지에 관해서는 우선 1970년에 발효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189개국이 비준한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이 있습니다. 이 조약에서는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양도 등을 하지 않으며 핵무기 비보유국은 핵무기의 입수, 개발, 제조 등을 하지 않는다는 상호의무를 지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물질 사찰 등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이용이 아닌 핵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원자력공급국이 협의하여 플루토늄, 원자로, 중수소 등 원자력전용품목(Trigger List)에 관한 수출규제 실시를 합의하여 1978년에 공표하였습니다. 이것을 런던가이드라인이라 합니다. 또한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의혹을 계기로 수출규제의 강화가 국제적으로 강력히 요청되어 런던가이드라인 참가국끼리 협의를 계속한 결과 1992년 4월에 런던가이드라인(Part2)로서 새롭게 강화된 수출규제의 실시를 합의했습니다. 그 요점은 이제까지의 규제가 원자로, 핵연료와 같은 핵무기개발을 위한 본체와 전용품에 한정되어있던 것을 확

대하여 이중용도(Dual-use)의 관련기기, 자재 등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Q** "M"은 무엇을 규제하는 것입니까?

**A** "M"은 미사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원래 핵탄두를 탑재하여 발사하는 운반수단으로써 규제되고 있었습니다. 그 국제적인 틀은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이라고 하며 핵폭탄을 실을 수 있는 로켓과 무인항공기의 개발·제조에 사용될 기재와 기술의 수출규제를 목적으로 1987년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1991년에는 규제 리스트에 대한 재검검이 이루어졌으며 1992년에는 핵폭탄 뿐만 아니라 생물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소형미사일에 까지 규제를 확대할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는 자주적인 법규제의 합의이며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8년 8월 31일에 북한이 태평양방면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여 주변국을 전율케 했습니다. 인공위성발사라고 하는 설도 있으나 군사목적으로 언제든 전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동북아 주변에서 개발·제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안전보장 관점에서 보더라도 큰 문제이며 미사일 및 그 기술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전략물자 무역관리에 대한 상담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STIC)

•전화 : (02)6000-5252~3 •인터넷 : <http://stic.kita.net>